

의안
번호

370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1.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370호
- 다. 제출일자 : 2024. 11. 7.
- 라. 회부일자 : 2024. 11. 15.

2. 제안이유

- 일자리 정책 계획 수립, 고용 촉진 사업 시행 및 일자리 지원시설 운영 등 성북구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규정 신설을 통해, 취업 기회 창출 및 구민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 정책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 하여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제4조)
- 다.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 라. 일자리 창출 사업·취업 지원 사업 추진 및 지원 (안 제6조~제7조)
- 마.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안 제9조~제11조)
- 바. 일자리위원회 회의 등 (안 제15조)
- 사. 일자리 지원시설 설치, 운영 및 기능 (안 제1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9.19. ~ 2024.10.10. (21일간)
 - 의 견 : 의견 없음.
- 라. 협의사항
 - 위원회 신설 관련 조항에 대한 사전협의(검토) 결과: 적정
[자치행정과-14890(2024.7.17.)호]
- 1)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 미반영

구분	권고내용	반영 여부	개선안
인권 영향 평가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주민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관련 별표 서비스 제공 기준표 대상 사업에 자전거 수리 및 재활용 사업 추가	미반영	[미반영 사유]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미칠 경제적 영향 등 고려

2)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 반영

구분	권고내용	반영 여부	개선안
부패 영향 평가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중략)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위치한 기업의 대표 2.~4. (현행과 같음) →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특혜를 유발하여 공정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삭제	반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좌동) ② (좌동) 1.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3. (좌동) → 제1호를 삭제하고, 기존 제4호를 제1호로 변경
부패 영향 평가	제15조(회의 등) ①~⑤ (현행과 같음) → 협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정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 추가	반영	제15조(회의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중략)...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해당 개선의견 수용하여 조례안 반영

3) 성별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 일부 반영

구분	권고내용	반영 여부	개선안
성별 영향	제5조(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반영	제5조(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좌동)

구분	권고내용	반영 여부	개선안
평가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일자리 개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6. (기존 5호) → 일자리 개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 포함 사항으로 명시		② (좌동) 1.~4. (좌동) 5. 일자리 개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해당 개선의견 수용하여 조례안 반영
	제5조(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어르신·청년·여성·장애인 등 각 분야별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신설> → 취업 취약계층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조항 신설	미반영	[미반영 사유] 조례 반영 여부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를 추진할 사항임 ※ 단, 현재 청년, 어르신, 여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대한 내용을 일자리 종합·연차별 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고 있음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6.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신설> 7. 관내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신설> 8. 중장년 및 고령층의 사회공헌활동 연계 취업 지원 사업<신설> → 관내 일자리의 질적 제고 및 취업 촉진을 위해, 추진 및 지원 범위 확대	미반영	[미반영 사유] 조례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를 추진할 사항임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중략)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3. (현행과 같음)	미반영	[미반영 사유] 조례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를 추진할 사항임

구분	권고내용	반영 여부	개선안
	4.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단, 어르신·청년·여성·장애인·사회적 경제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③ (현행과 같음) → 위원회 구성 시, 취업취약계층 분야별 전문가 1명씩 포함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2023년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과 됨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성북구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 19개, 부칙 1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짐.

□ 주요내용

- 안 제1장은 총칙 규정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용어 중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¹⁾의 조문을 인용함.
- 안 제3조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미취업자 고용촉진 환경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으로 본 제정안이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다른 조례와의 우선순위 규정을 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장은 일자리 정책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5조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3항²⁾에 따라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이를 추진 및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히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주민대상 서비스 사업(우산수리 재활용 사업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음.
- 안 제8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안 제3장은 일자리창출, 대책 수립 및 관련사업 등을 심의·자문하는 일자리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안 제9조는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4조 및 제15조, 제16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수당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함.
- 안 제4장은 일자리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7조는 일자리 제공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해 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을 명시하고, 일자리 지원시설에 상담창구 등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와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18조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 안 제19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³⁾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성북구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일자리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지원시설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일자리 감소 등 일자리 환경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3)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